

지원금 수급자격 상실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 고 인	성명	생년월일(YYYYMMDD)	
	현주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 주소	소속 / 직급(호봉)	
	/	/	
	무급휴직 종료 일자		
	00.00.00.		

본인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지원금 수급자격이 상실되었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방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주한미군사령부로부터 받은 무급휴직 종료 통지서 또는 복직 통지서 등 지원금 수급자격 상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상용)	
안내사항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결정서를 송달 받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는 무급휴직이 종료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 수급자격 상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